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2 | 2026.3.9 (2026.3.3~2026.3.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년도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정책을 넘어 기업을 데이터 활용 주체로 확대한 기업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5인)」,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의원 등 12인)」**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의원 등 11인)」** ,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

한미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위>, <대미투자법특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법무부) 7
-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무조정실)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3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4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1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5인) 15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17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의원 등 12인) 17
-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의원 등 11인) 18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19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의원 등 11인) 1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21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21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박주민의원 등 15인) 22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3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2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의원 등 11인) 2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24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환경]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1)
- [노동] 포괄임금제 오 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이 실시됩니다.
-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5) 개정법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1)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 [방송통신(TMT)]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소송] 2026 사법 대변혁: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와 사법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2)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2. 4. - 2026. 3. 3.)
- [글로벌리스크대응]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전망
- [소송]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 국민 일자리 · 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2026-03-03
-------	--	------------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음.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수인재 범위를 넓히고, 지역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양성

-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 연구원’까지 확대
- 단순노무·저학력 비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하여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
-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게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
-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의 돌봄 부담을 완화

②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 혁신

- 기업인과 고용주, 외국인이 비자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여,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 장기, 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 대민서비스(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웹사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
-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서류 준비(1차 검토) 및 전자적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하게 하는 ‘출입국 민원 대행’을 활성화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과 처리 속도를 향상
-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
-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귀화 등) 신청을 대리·대행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을 개정

③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통합능력이 높은 유치대상그룹을 연구하고, 외국인력 유치 등에 활용
-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취업비자 외에 다른 유형(유학·연수, 가족이민, 사업투자, 관광 비자)으로도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생경제 파급효과 등을 계량 분석하여 연간 적정 비자 발급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임금) 등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

④ 고위험 외국인 차단,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 우대

-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세계 일등 수준의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구축
-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의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칭)「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단속 예고,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등 ‘보이는 치안’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증과제 3건 공모 추진
- 기업데이터 활용 사례발굴 및 확산으로 산업 전반 AX 가속화

2026-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26년도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3월 6일(금)부터 4월 6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기정통부와 K-DATA는 '19년부터 추진해 온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개편하여,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정책을 넘어 기업(법인·개인사업자 등)을 데이터 활용 주체로 확대한 기업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동의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혁신서비스 개발과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할 계획임

올해 공모분야는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3개 과제를 지원함. 공모 내용은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업데이터의 수집·전송·활용 전 주기에 AI 기술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은 실증서비스에 AI 기술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지원 대상은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활용하여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 역할 분담 및 동의 기반 데이터 전송·연계 체계를 갖춘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임. 최종 선정된 과제는 서비스 개발, 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으로 과제당 최대 7억 원을 지원받음

< 2026년 기업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공고 요약 >

구분	주요내용
접수일정	2026. 3. 6.(금) ~ 4. 6.(월), 14:00
사업설명회	2026. 3. 9.(월) 14:00 / 실시간 온라인(zoom)
지원대상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시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 1개 이상 확보 필수
지원규모	총 21억원 이내(총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7억원)
선정·지정 절차	공모→접수→사전검토→평가(서면, 발표)→선정
접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s://www.kdata.or.kr/mydata/)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2026-03-06 시행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10 시행 예정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①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14조의3제3항 단서 및 제14조의5제5항 단서 신설)
-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인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의 구체화(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3-10 시행 예정
-------	---------------------------	------------------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등에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03 시행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03 시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3.03. ~2026.03.16.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 요건과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에도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구분계산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tel:044-215-4226)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3.03. ~2026.03.16.
-------	----------------------------	-----------------------------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및 고교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건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tel:044-215-4131)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3.03. ~2026.03.16.
-------	---------------------------	-----------------------------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자, 송전 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tel:044-215-432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05.
~2026.04.14.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 (안 제7조제2항)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③ 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명확화 (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회사 및 인가’ 기준으로 정비

④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한도 상향 (안 제7조제2항)

-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10 → 20% 상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전화: 044-204-7711, 팩스: 044-204-7719)

중소벤처기업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6.03.06.
~2026.04.15.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18호, ’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 (안 제11조의3 신설)

-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882, 팩스: 044-202-3941)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03.
~2026.04.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추정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26, 팩스: 044-203-4769)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04.
~2026.04.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 (안 제30조제1항)
-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30조제2항)
- ③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 (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④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 (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6-03-03 발의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3항제2호)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6-03-03 발의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2026-03-04 발의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3-04 발의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7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6-03-06 발의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6-03-04 발의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6-03-05 발의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

행정안전위원회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의원 등 12인)

2026-03-04 발의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물류·부동산·안전·통계·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AI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안전(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체계확립'의 세부과제에 '주소정보인공지능 추론 체계 개발'이 선정)과 관련한 핵심 산업임. 그런데, 현재 주소정보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의원 등 11인)

2026-03-06 발의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장애로 인해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자연재난 및 복합적인 사회재난이 원인이 되는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생존력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일원화 및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재난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상부터 해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문들을 정리하여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제도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의원 등 10인)

2026-03-0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2026-03-04 발의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2026-03-06 발의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2026-03-04 발의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6-03-05 발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6-03-05 발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안보 동맹과 산업협력을 토대로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2026-03-05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
인)

2026-03-03 발의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성인 및 소아·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연구, 치료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박주민의원 등 15인)

2026-03-05 발의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2026-03-06 발의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관계 부처·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6-03-0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63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026-03-06 발의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의원 등 10인)

2026-03-03 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2026-03-04 발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6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2026-03-04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24인)

2026-03-05 발의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안 제58조의3제4항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3/10(화) 10: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3/10(화) 15: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11(수) 10:00	- 법안 의결
와통위	법안소위	3/11(수) 14:00	- 법안 심사
행안위	법안2소위	3/9(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3/11(수) 11:00	- 법안 심사
산자위	전체회의	3/9(월) 14:00	- 법안 상정, 업무보고, 현안 보고
대미투자법 특위	법안소위	3/9(월) 11:00	- 법안 심사·의결
	전체회의	3/9(월) 14:00	- 법안 심사·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9(월) 10:00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	조지연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9(월) 10:00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최보윤·김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3/9(월) 14:00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 정책 토론회	김현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0(화) 10:30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	박성훈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3/11(수) 13:40	AI 시대 K-방산 지속발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해법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11(수) 14:00	民·商法 전문연구기관의 의의 및 법제화 방안	김한규·유상범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3/11(수) 14:00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보윤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3/12(목) 14:00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박상혁·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3/12(목) 16:00	세계석학초청 특별 강연	김영배·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3/9(월)	「Data+」 제2026-3호(통권 제27호) 발간	국회도서관	
	3/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9호(통권 제768호) 발간		
	3/11(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3호(통권 제27호) 발간		
	3/12(목)	「금주의 보고서」 제2026-8호(통권 제40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3호(통권 제291호)	국회도서관	
	3/4(수)	「금주의 서평」 제2026-8호(통권 제767호)		
	3/5(목)	「금주의 보고서」 제2026-7호(통권 제39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3(화)	환경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1)
3/3(화)	노동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이 실시됩니다.
3/3(화)	지적재산권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 (5) 개정법
3/4(수)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1)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3/4(수)	방송통신(TMT)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3/4(수)	소송	2026 사법 대변혁: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와 사법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3/5(목)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2)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3/6(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3/6(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2. 4. - 2026. 3. 3.)
3/6(금)	글로벌리스크대응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전망
3/6(금)	소송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